

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토보고서

2017. 12. 6.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 안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금호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

나. 민간위탁 개요

- 1) 위탁기간: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
- 2) 위탁시설: 금호스포츠센터
- 3) 위탁방법: 민간위탁심의운영회에서 선정
- 4) 위탁사무: 각시설 운영 및 관리,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납부, 민원 사항처리, 청소 등
- 5) 운영예산: 404,365천원(2018년 대행사업비)

다. 위탁시설 현황

- 1) 시설명: 금호스포츠센터
- 2) 위 치: 금호4가동 56
- 3) 면 적: 2,193 m^2
- 4) 주요시설: 배드민턴코트 12면, 체력단련실, 샤워장
- 5) 개 장 일: 2017. 11. 25.
- 6) 운영시간: 06:00 ~ 22:00
- 7) 운영인력: 5명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1)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로 공익성과 주민서비스 향상
- 2) 시설 운영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인 시설 운영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

나. 예산조치

- 1) 소요예산: 404,365천원(2018년 대행사업비)
- 2) 예산확보: 2018년 본예산 편성 예정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25일 개장한 금호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- 금호유수지 내 2,193m² 규모로 조성한 금호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·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, 추후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, 민간위탁 이후에는 매년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
- 단, 해당시설은 준공일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현재까지 「성동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시설의 명칭·기능 등을 추가하지 않은 바,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